

「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
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지침의 개정사항 및 행정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사용료 산출기준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처리시설 운영 관련 행정절차 신설(안 제9조 ~ 제14조)
 - 오·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신청(별지 제1호서식 ~ 제2호서식)
 -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및 검사 신청(별지 제4호서식 ~ 제5호서식)
 - 유량계 등의 측정기기 및 유량조정조의 설치 의무
-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(안 제17조)
- 설치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대한 단서 신설(안 제21조)
 - 부담금액별 분할 고지 및 납부义务的 중단에 관한 사항
- 사용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단서 신설 및 산출기준(안 제26조)
 - 납부义务的 중단에 관한 사항
 - 사용료 산출기준 변경(별표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물환경보전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기업투자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사용료 산출 기준의 재정비와 운영 관련 행정절차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사용료 산출기준 변경을 통해 실제 처리량에 따른 합리적 비용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, 시설 가동률을 반영함으로써 휴·폐업 기업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